

#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

전용식 연구위원

정책토론회  
2017.8.28(월)

---

# 목차

- I.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
- II.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
- III. 제도개선 방안
- IV. 결론

# I.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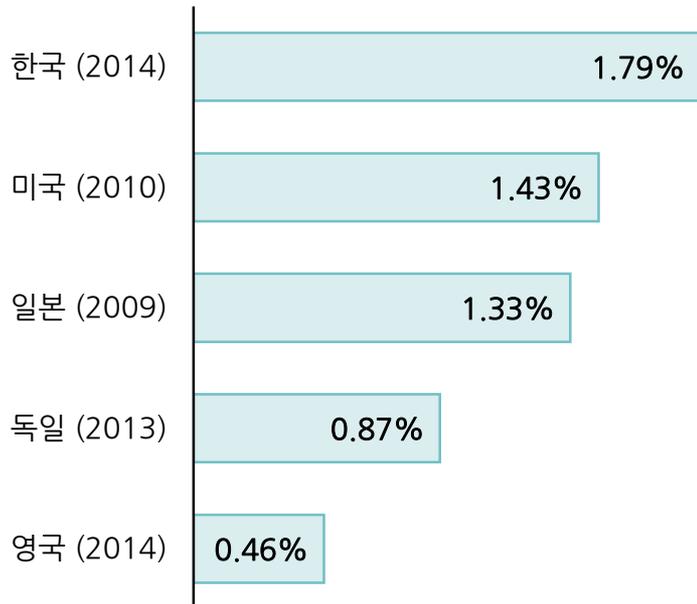
1.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 빈도
2.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..대인사고 비중 60%
3. 음주운전과 경상환자 보험금 증가
4. 음주운전 발생건수 증가, 지속
5.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교
6.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와 진료기간

# 1.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 빈도

-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비중은 2014년 1.79%인데,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
- 2013년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.2명으로 OECD평균 1.1명의 두 배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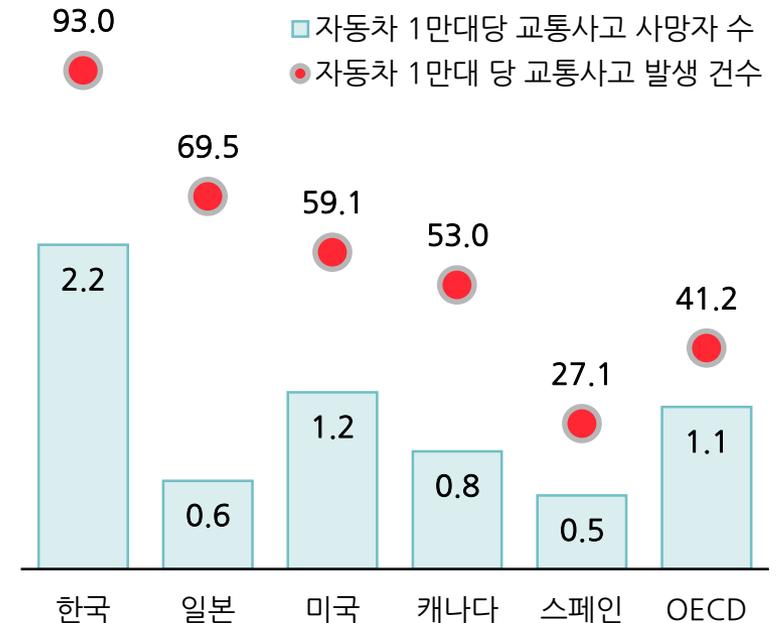
##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주요 지표

### 주요국 GDP대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



자료: 도로교통공단(2016)

### 2013년 주요국 교통사고 현황



자료: OECD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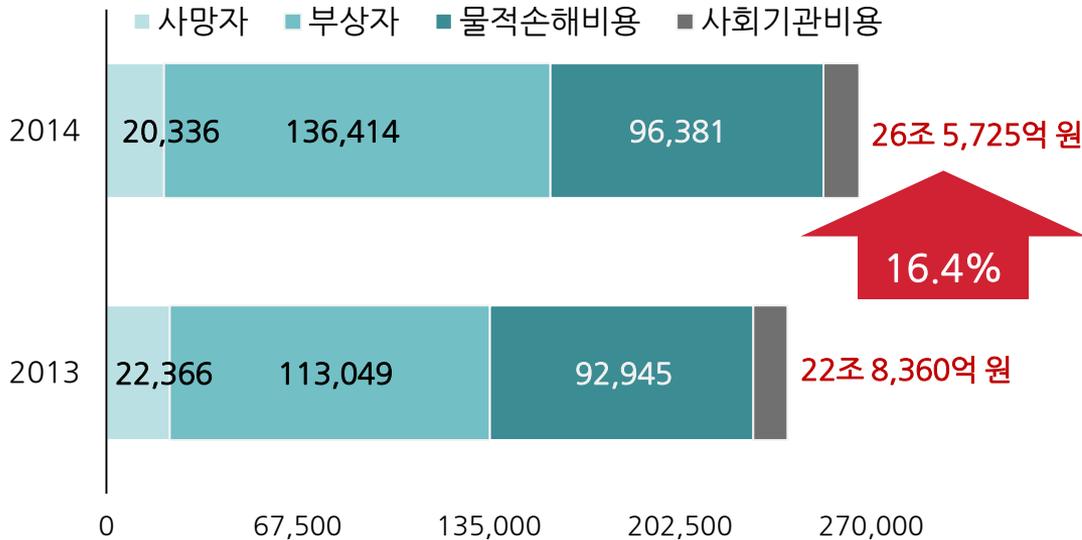
## 2.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...대인사고 비중이 60%

- 2014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26조 5,725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6.4% 증가
- 사망 보험금, 부상 치료비 등의 비중이 60%이며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4억 2,704만 원, 중상 5,224만 원, 경상 299만 원임

###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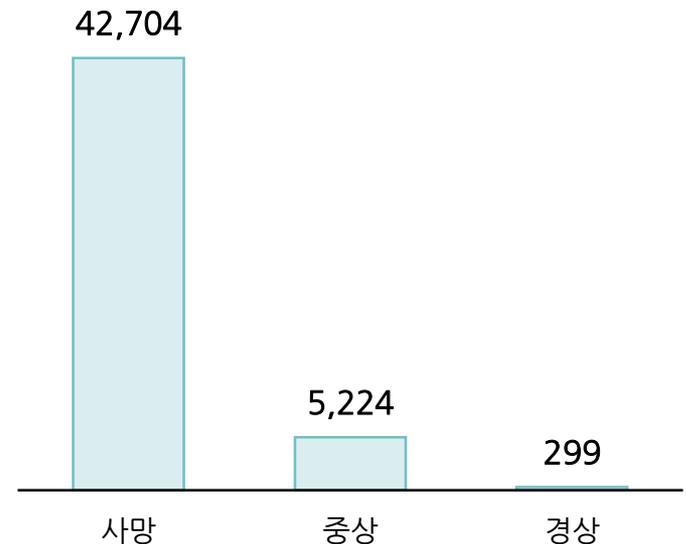
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구분

(단위: 억 원)



1인당 평균 사고비용

(단위: 만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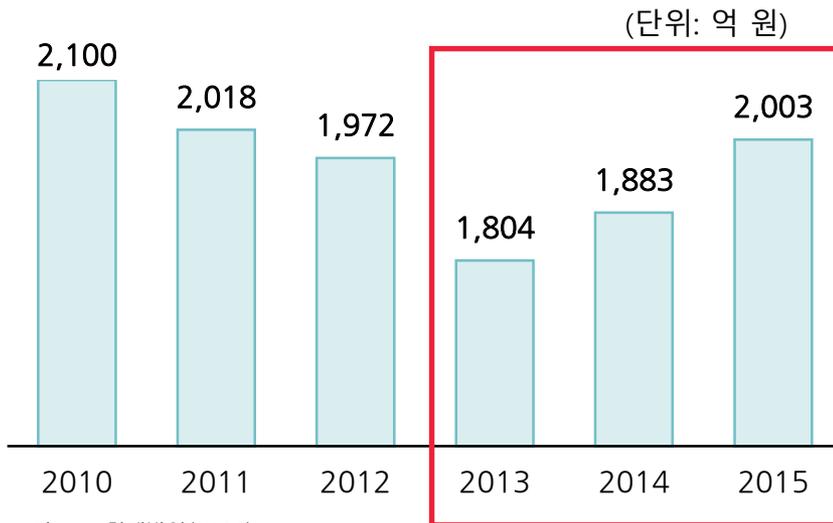
자료: 도로교통공단(2016)

### 3. 음주운전과 경상환자 보험금 증가..보험료 인상압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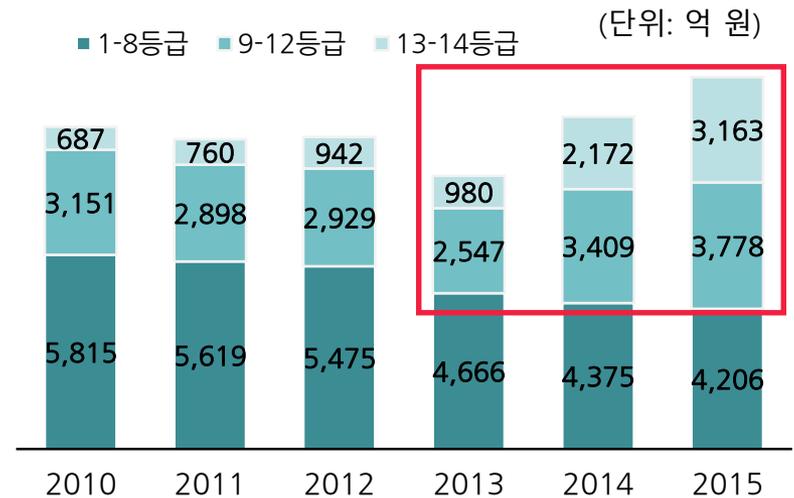
- 교통사고 사망자의 10% 내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,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는 2013년 1,804억 원에서 2015년 2,003억 원으로 증가
-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, 14급 치료비는 2010년 687억 원에서 2015년 3,163억 원으로 연평균 35.7% 증가

#### 음주운전과 경상환자 치료비

음주운전 인적 보험금 지급 규모



상해등급별 보험금(치료비) 규모



자료: 보험개발원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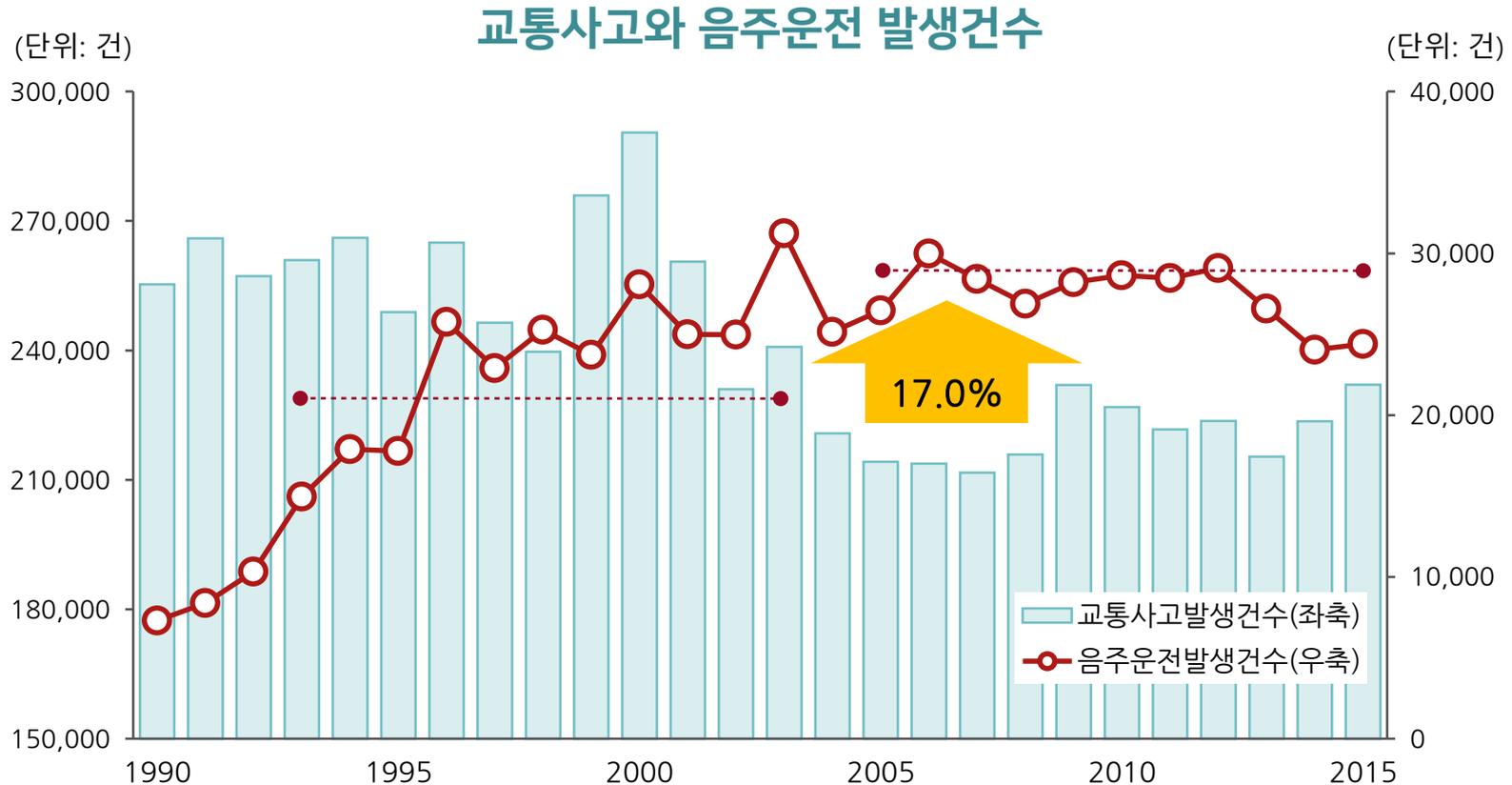
음주운전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

급격히 증가하는 경상환자 보험금(치료비)

보험료 인상 요인

## 4. 음주운전 발생 건수 증가, 지속

- 2005년부터 201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0,967건으로 1993-2003년 256,902건에 비해 14.0% 감소
- 반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05년부터 2015년간 27,379건으로 1993-2003년간 23,414건에 비해 17.0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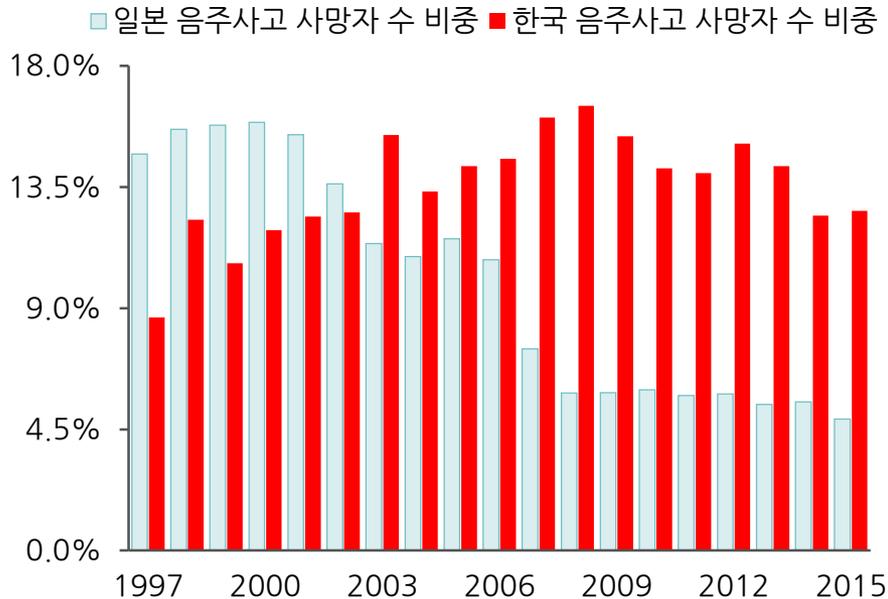
자료: 도로교통공단(2016)

## 5.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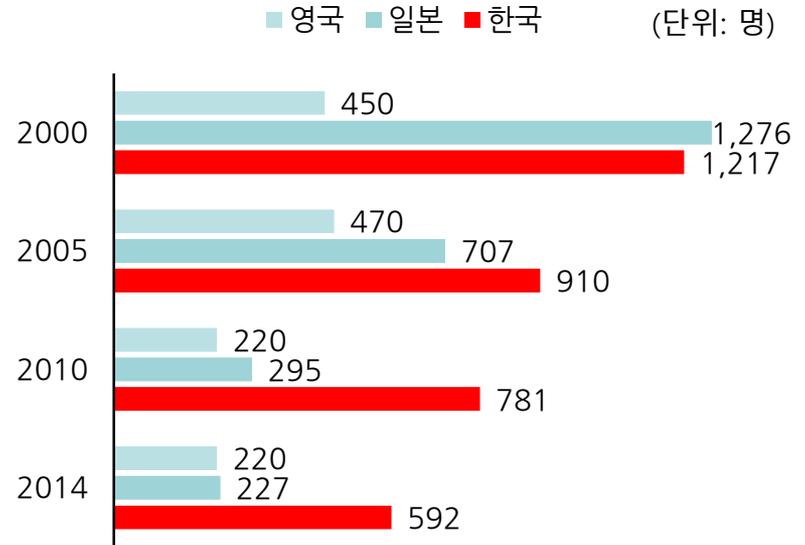
-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수 비중은 1997년 14.7%에서 2015년 4.9%로 하락
-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수 비중은 1997년 9%에서 2015년 13%로 상승

### 주요국의 음주운전 사망 지표 비교

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비중



주요국 음주운전 사망자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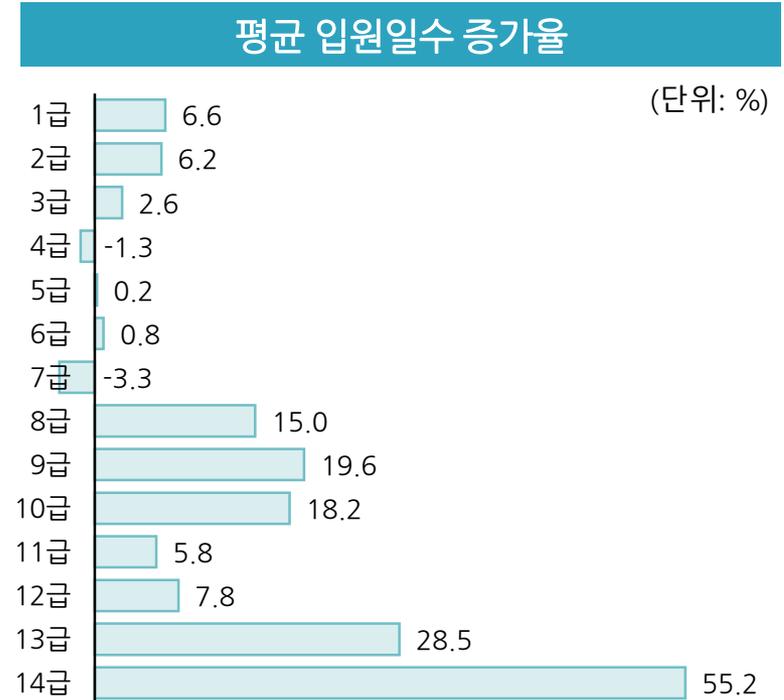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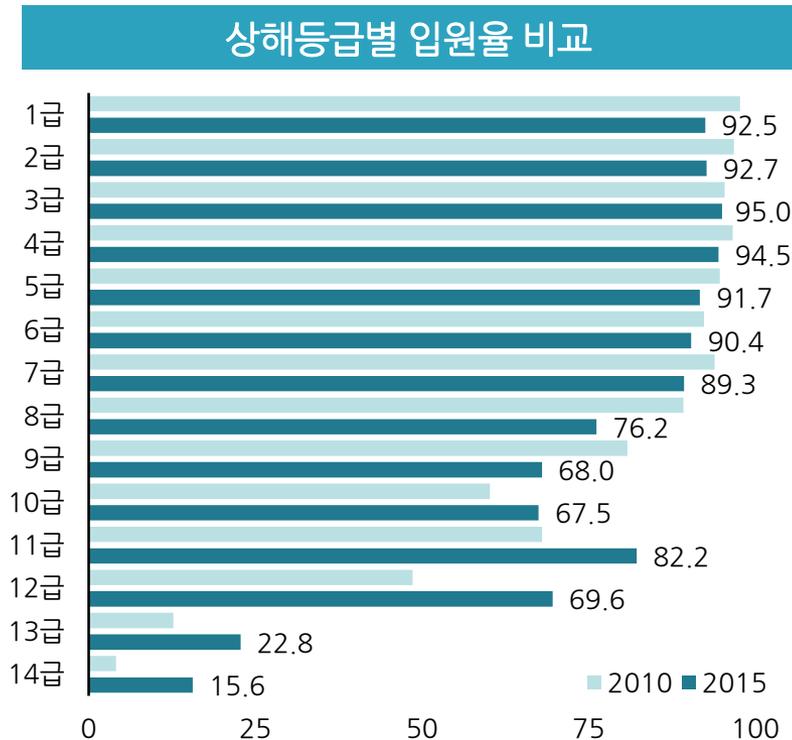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도로교통공단(2016), 일본 경찰청, 영국 ABI

## 6.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와 진료기간

- 2015년 상해등급 13, 14급 경상환자의 입원율은 22.8%와 15.6%로 2010년에 비해 크게 상승함
-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등급 13, 14급 평균 입원일수는 28.5%, 55.2%로 크게 증가함.  
경상환자의 입원율은 2000년부터 높은 수준으로 지속

### 2010년과 2015년 상해등급별 입원율과 입원일수 증가율



자료: 보험개발원(2016)

## II.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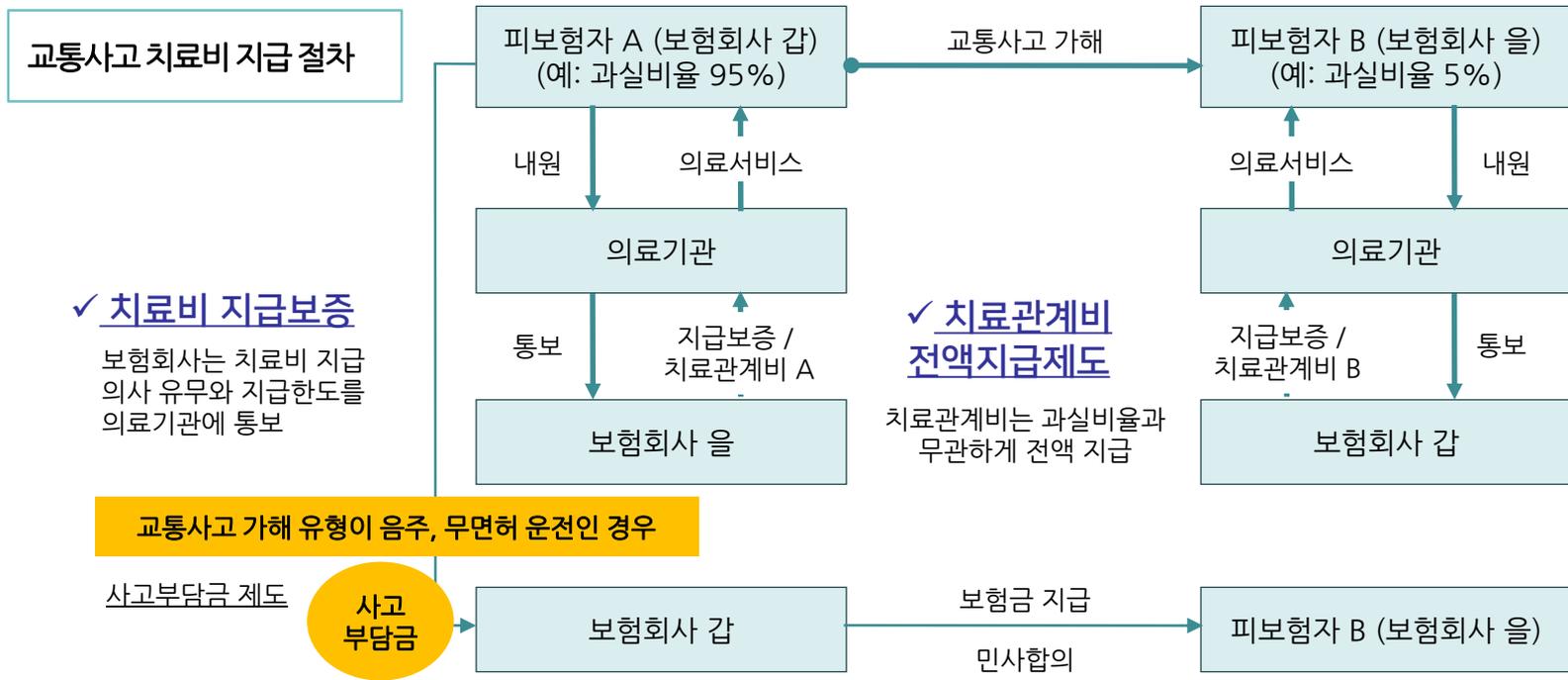
1. 제도적 원인과 문제점
  - 1)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절차와 사고예방 대책
  - 2) 지속되는 음주운전
  - 3) 사고부담금과 치료비 전액지급 제도
  - 4)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 원인..치료비 지급보증 제도
  - 5) 보험금 누수, 형평성 훼손과 미약한 사고예방
2. 보험금 지급사례

---

## 1. 제도적 원인과 문제점

# 1.1.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절차와 사고예방 대책

-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, 치료비 지급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음
-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,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(2004년) 도입, 최근 난폭운전 처벌을 강화  
 - 2015년 8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처벌조항 신설 / 2016년 2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



난폭운전은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과속, 횡단/유턴/후진 금지 위반, 진로변경 방법 위반, 급제동, 앞지르기 방법 위반, 안전거리 미확보,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/반복,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·위험을 가한 행위

# 1.2. 지속되는 음주운전

- 음주운전 가해자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음주운전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고, 이로 인해 가해자의 형사책임도 감경되는 경향이 있음
-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담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고예방 효과 미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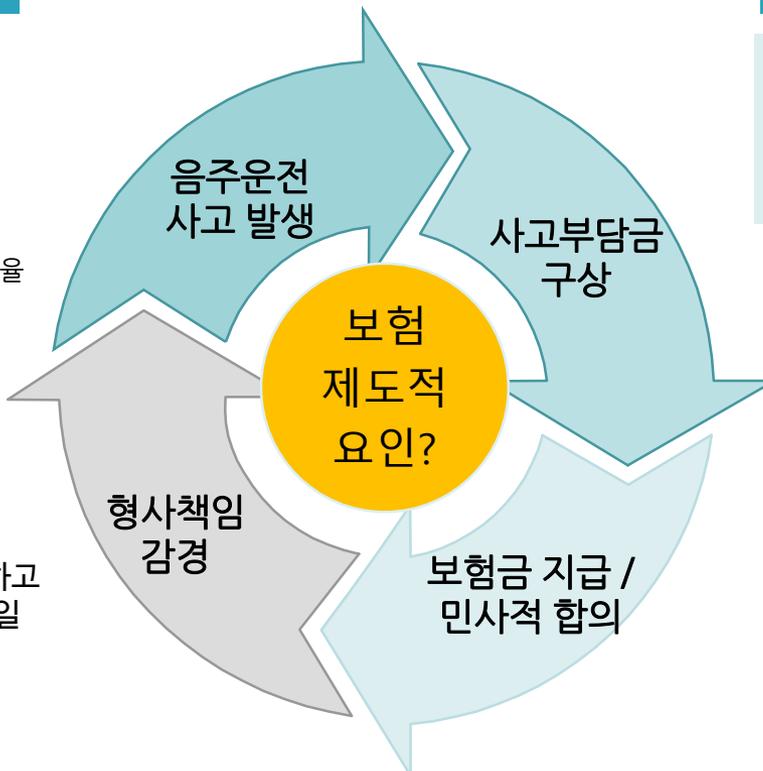
## 음주운전 지속의 악순환 고리

### 형사적 책임 감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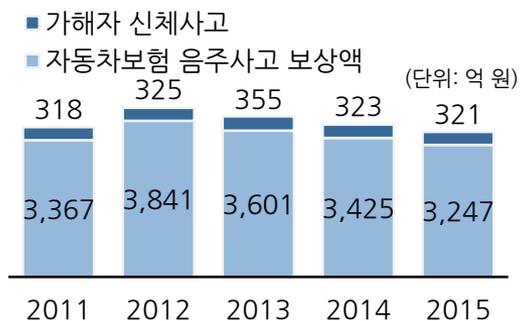
###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

- 법원은 민사적 처리를 종결하고 반성의 기미가 있으며, 초범일 경우, 형벌 감경



### 낮은 민사적 책임부담 비용

- 사고부담금 제도
  - ▶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 예방 목적 2004년 도입
  - ▶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사고부담금 300만 원(대인) (대물 100 만 원) 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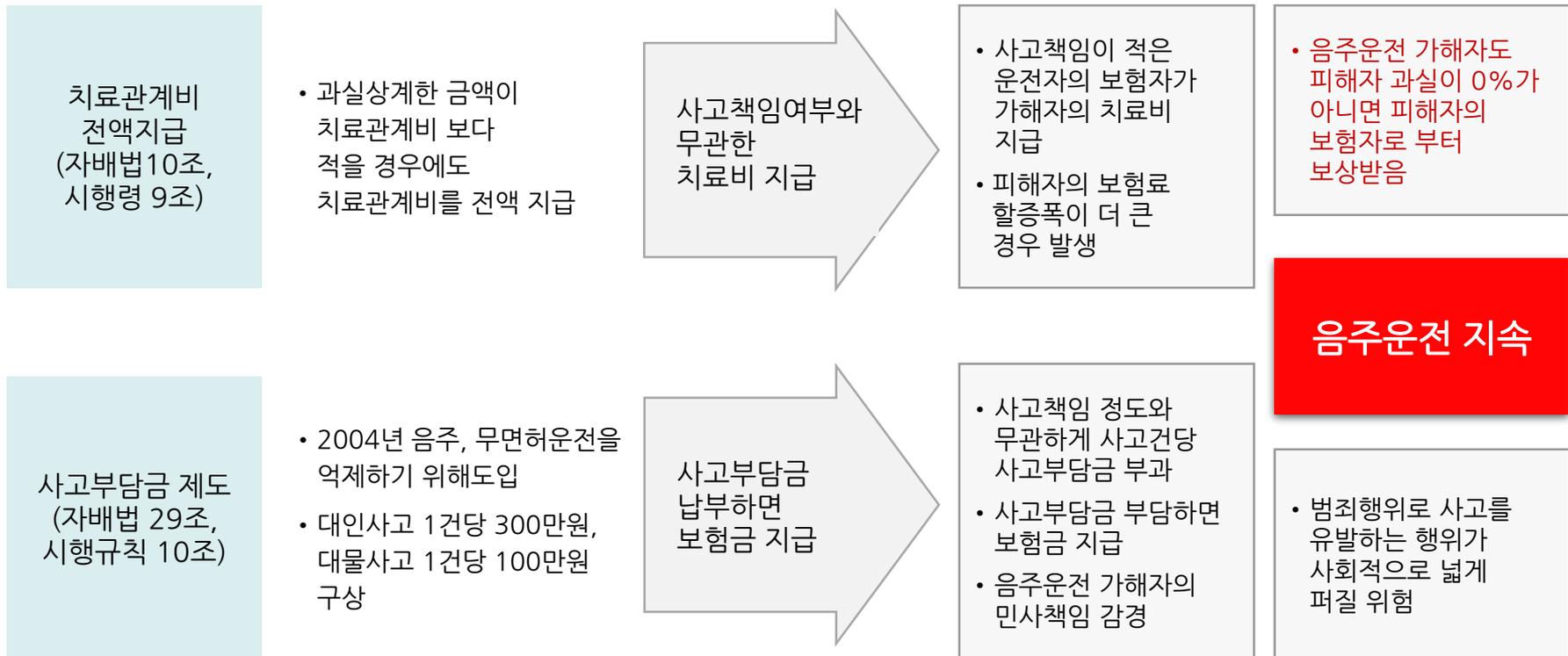


-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및 합의
- 민사적 합의 종료 **kiri** 보험연구원

# 1.3. 사고부담금과 치료비 전액지급제도

- 자동차사고에 의한 부상자는 가·피해자 여부를 불문하고 상해등급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
- 사고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치료관계비 지급과 사고 건당 사고부담금 지급 제도는 보험제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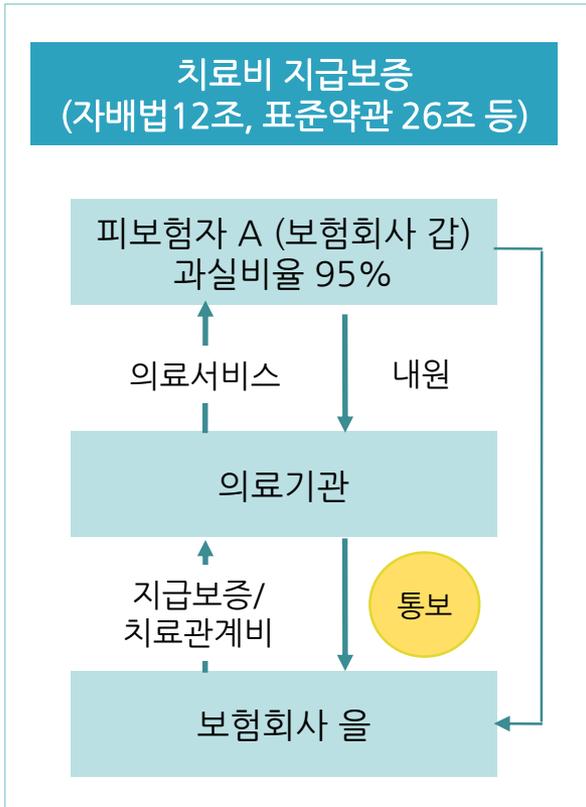
## 음주운전 지속과 형평성 훼손의 제도적 원인



# 1.4.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정보비대칭성

- 현행 지급보증제도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해 관련 정보부족으로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기한 없고 금액한정 없이 지급보증 할 수 밖에 없음..과잉치료 유인으로 작용
- 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에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피보험자의 선택을 제한, 피보험자의 부담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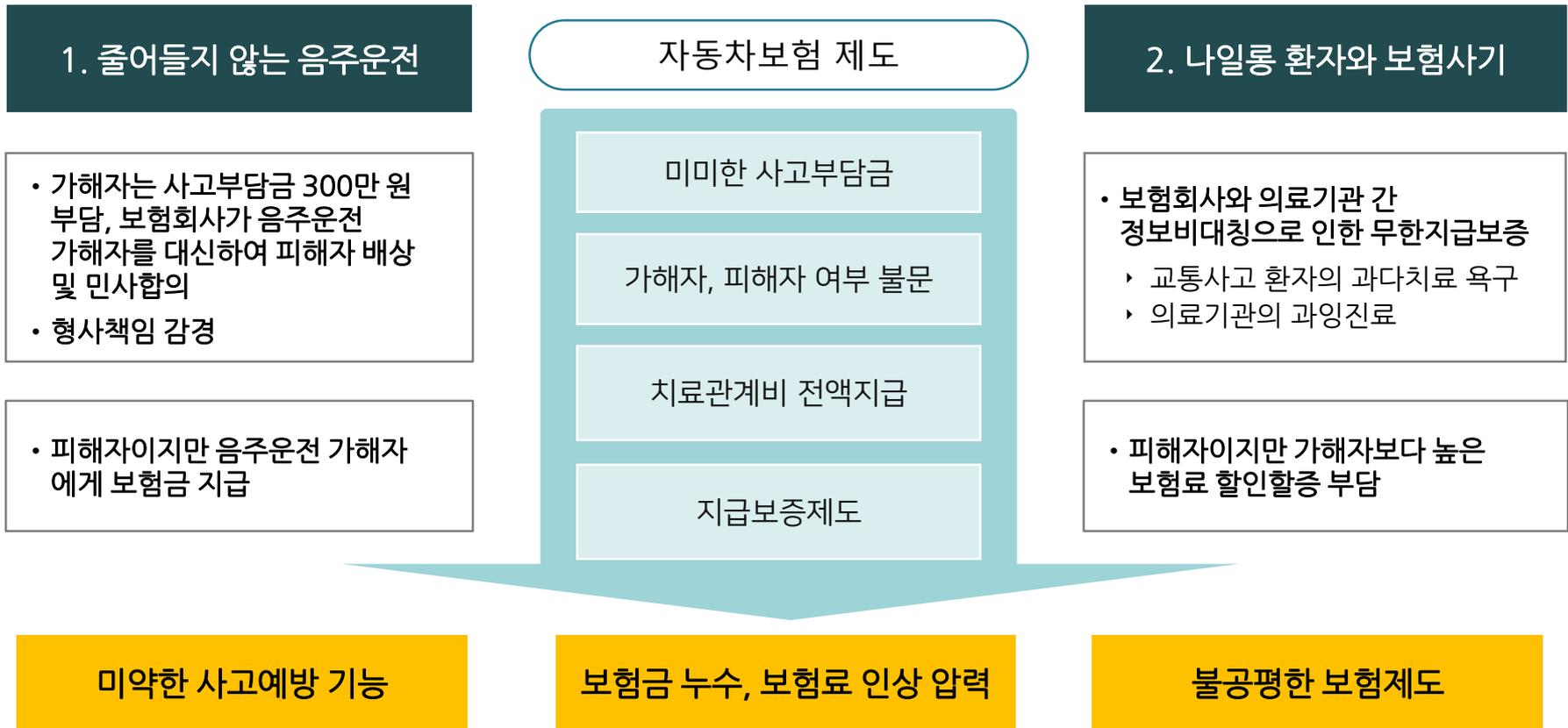
##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보 시점/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치료 종결 시점에 교통사고 환자 내원을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999년 대인배상1에 적용 이후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인배상2, 자기신체사고 등에도 지급보증 적용</li> </ul>	<p><b>소비자 선택 제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기신체사고에도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</li> <li>• 치료단가 상승, 자기부담금 발생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정보비대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교통사고 환자의 최초 상해 정도에 대한 정보 부재로 치료 기간, 금액 추산이 어려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상환자 치료기간 증가</li> <li>• 나일롱 환자 지속</li> </ul>	<p><b>보험금 누수</b>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한없고 금액 한정 없이 지급보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한지급보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치료유인 확대</li> <li>•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치료 유인</li> </ul>	<p><b>선량한 보험계약자 부담 확대</b>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도한 보험금 지급 유인발생</li> </ul>		

# 1.5. 보험금 누수, 형평성 훼손과 미약한 사고예방 효과

- 지속되는 음주운전과 경상사고 환자의 치료비 증가는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
-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보험금(치료비)을 지급하는 부조리를 양산하며 가해자의 사고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고예방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



---

## 2. 보험금 지급 사례

# 1. 보험금 지급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

## 사고부담금/ 음주운전

- 1년 전 야간청소를 하던 박 씨, 유 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.225%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 박 씨는 두 다리를 절단, 동료 유 씨도 왼쪽 다리를 잃음.
  - 음주운전 사고는 두 사람의 직장과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음.
  -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

음주운전 지속  
사회적 비용 증가 /  
불법행위 가해자의 손해를  
선량한 계약자들이 보상

##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

- 과실 10%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 2,500만 원 보상, 높은 보험료 할증
  -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위반 운전자로 과실비율 90%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10%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**치료비 전액지급제도가 원인**
  - 피해자는 치료비 200만 원을 보상받음
  - 피해자가 보상한 치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차년도 보험료 할증이 더 큼

과실이 적은 피해자의  
부담 확대.. **형평성 훼손**

## 지급보증

- 자기차량 피해 없는 경미사고(견적 無, 38만원 등)이나 20개월 이상 지속 치료 중
- 2011년 사고, 염좌진단으로 5년간 치료를 진행
  - **무한지급보증**으로 다수의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

치료기간 장기화  
나일롱 환자..  
**보험금 누수 지속 /  
보험료 인상압력 작용**

### III. 제도개선 방안

---

1. 사고부담금 제도 확대 강화
2.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선
3.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개선
4. 심평원에 의한 수가마련 및 현지 조사권한 부여

# 1. 사고부담금제도 확대 강화

-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
- 난폭운전 형사처벌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음주, 무면허 이외의 11대 중과실 위반행위에 사고부담금 확대 고려

<p>사회적 제재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주,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대인 보험금의 일부(예: 20% 한도)를 부담</li> </ul>
<p>자배법 개정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고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음주, 무면허 이외의 11대 중과실 위반행위에도 사고부담금 확대 방안 고려</li> <li>• 제29조 (보험금등의 지급 등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9호 부터 제11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액을 구상(求償)할 수 있다.</li> </ul> </li> </ul>
<p>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10조 (구상금액)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. 다만, 보험회사 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: 피해 1건당 300만 원</li> <li>2.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: 피해 1건당 100만 원</li> </ol> </li> <li>② 법 제29조 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액” 이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총액의 20%를 말한다. 다만, 보험회사 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1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총액의 100%를 말한다</li> </ul>

## 2.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선

-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0%가 아닐 경우, 피해자의 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(치료관계비)을 감액하여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책임 부담을 확대
- 사고책임부담 확대를 통해 음주운전 억제효과를 제고

### 사고책임 부담 확대

- [대인배상]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본인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

### 자배법 개정안

#### 제10조 (보험금등의 청구) ①,② (생략)

- ③ 보험회사 등은 피해자의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에 관련된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

###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

#### 제9조 (보험금등의 감액)

- ① 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「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의 치료관계비를 감액할 수 있다
- ② 감액의 금액은 치료관계비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

### 3.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개선

-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초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은 즉시 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통보
  - 자기신체사고는 지급보증에서 제외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
- 합리적 피해자보호를 위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참조로 지급보증 기간 및 한도를 연장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함

<p>지급보증 합리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대인배상] 보험회사가 교통사고환자의 지급보증의 유무, 지급보증 한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 시 기초정보를 제공해야 함</li> <li>• [자기신체사고 등] 건강보험 우선적용, 치과와 한방치료는 급여를 보장.</li> </ul>
<p>자배법 개정안</p>	<p><b>제12조 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)</b></p> <p>① 의료기관은 자동차사고환자가 진료를 위해 해당의료기관에 내원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사고 환자의 발생사실, 내원 또는 입원 방법 등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릴 수 있는 기초자료를 알려야 한다.</p> <p>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 등이 알리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자동차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.</p> <p>★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참조로 지급보증 기간 및 한도를 연장 또는 증액함</p>
<p>자기신체사고 약관 개정안</p>	<p><b>제15조 (보험금의 종류와 한도)</b></p> <p>국민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“2. 한도” 내에서 지급합니다. 다만 치과치료, 한방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.</p>

## 4. 심평원에 의한 수가마련 및 현지조사 권한 부여

-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,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방문조사를 통해 과잉치료, 과다청구 등 방지

### 보험금 심사 강화

- [자동차보험 진료수가] 진료비 심사를 하는 기관이 제반 데이터에 의해 수가 결정
- [과잉치료, 과다청구 방지]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조사, 자료제출 요구 등 건강보험 수준의 권한 부여

### 자배법 개정안

제15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3조(검사·질문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활시설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관련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고, 자료 제출의 요구 및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, 질문할 수 있다. 1.~2.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고, 자료 제출의 요구 및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, 질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2조2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에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
2.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해등급별 평균 진료비, 상해등급별 평균 입원일수 등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

---

## IV. 결론

---

# 1. 기대효과와 고려사항

-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사고예방, 합리적 피해자 보호,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압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<p>관련 제도</p>	<p>치료관계비 전액지급 (자배법10조, 시행령 9조)</p>	<p>사고부담금 확대 강화 (자배법 29조, 시행규칙 10조)</p>	<p>치료비 지급보증 (자배법12조, 표준약관 26조 등)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(자배법15조)</p>
<p>개선 방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주, 뺑소니, 무면허 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하는 치료비의 일부를 가해자 본인이 부담 (최대 50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주/무면허 운전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(20%)를 부담</li> <li>•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을 음주, 무면허 제외 11대 중과 실 위반 행위로 확대 고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기신체사고 지급보증 적용 제외, 건강보험 우선 적용</li> <li>•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상해정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</li> <li>•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</li> </ul>
<p>고려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★ 교통사고 환자가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기관 발행 의사 소견서 등을 참조, 지급보증 기간 및 한도를 연장 또는 증액</li> </ul>		
<p>기대효과</p>	<p>형평성 제고</p>	<p>사고예방</p>	<p>합리적 피해자 보호</p>
<p>사고예방, 형평성 제고, 보험금 누수 억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 약화</p>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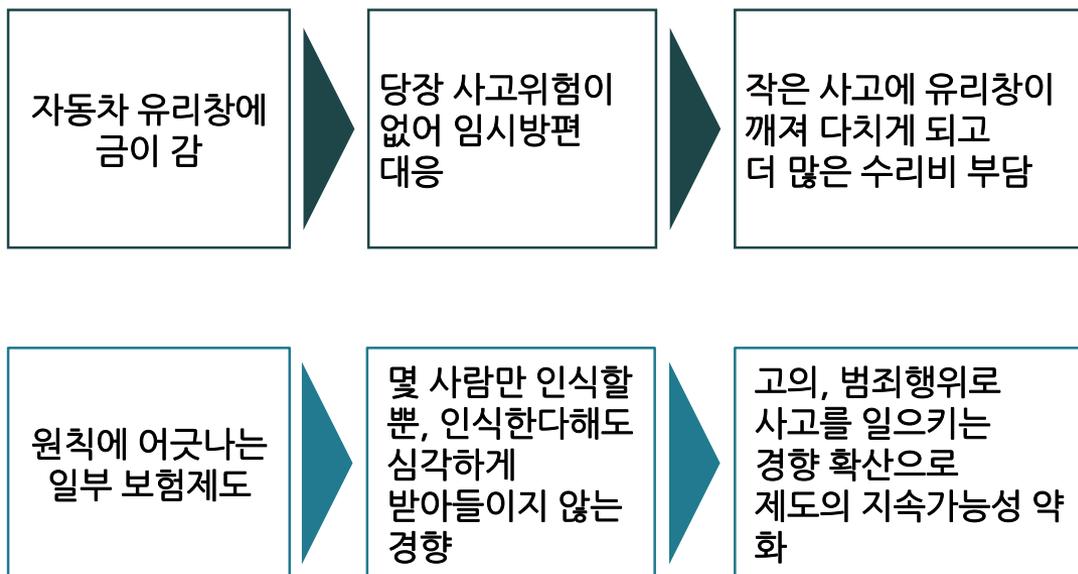
## 2.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

- 일부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자동차보험제도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

### Broken Window Theory



- 사소한 문제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



감사합니다